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록포로 등급제 폐지 등 〉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81호)

〈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생사파악 등 포함 〉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8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등록포로 등급제 폐지	5
2. 등록포로 월지원금 상향단일화	9
3.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등 포함	12

I. 제안경위

1. 김기현의원안

1.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16.
3. 회 부 일 : 2025. 12. 17.

2. 강선영의원안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28.
3. 회 부 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기현의원안

북한은 6·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 만에 탈북·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

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국군포로송환법 제6조는 국방부장관이 탈북 귀환포로의 등록 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 기준에 따라 1등급(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서적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4조는 ‘3등급’ 결정의 세부기준으로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국군포로의 송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며 ‘부역자’ 낙인을 찍고 귀환포로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특히, 탈북 귀환포로 80인 중 ‘무등급’인 조창호 중위를 제외하면 ‘1등급’은 단 1명도 없고, ‘2등급’이 9명(전원 사망), ‘3등급’이 70명(생존

자 6명, 사망자 64명)이라는 등급 분류 실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대가로 북한에서 수십 년간 이른바 ‘43호’라 불리며 멸시와 감시, 강제노역을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살아계신 6인 모두를 포함하여 탈북 귀환포로 70인을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3등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군포로 개개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귀환포로 80인 중 70인을 ‘부역자’로 분류해서 국군포로의 ‘귀순’, ‘변절’을 인정했다는 논리로 북한의 제네바협약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규범 위반 등 국제법상 책임을 회색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상당함.

이에 국군포로 ‘등급’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부장관이 등록 포로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은 현행 규정상 ‘1등급’ 기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1조).

2. 강선영의원안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상봉·서신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규정이 미흡하여 국군포로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등록포로 등급제 폐지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 1~3등급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등급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 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u> <u>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u> ④ (생략) ⑤ -----제2항 내지 제 4항의-----여부 및 등급을----- ----- ----- ----- -----. ⑥ (생략) ⑦ -----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 -----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 항의-----여부를----- ----- -----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 -----신청절차와 그----- ----- ----- -----.
---	---

☐ 현행법에 따른 귀환포로는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6조제1항¹⁾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 1~3등급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취소) ①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등급: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등급: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 현행법에 따른 탈북 귀환포로 현황을 보면, 총 80인 중 1등급은 없고, 2등급 9인(전원 사망), 3등급 70인(생존자 6인, 사망자 64인)이며, 1994년에 탈북·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한 조창호 중위는 무등급²⁾임.

구분	인원	생존자	비고
무등급	1인	0인	조창호 중위
1등급	0인	0인	
2등급	9인	0인	
3등급	70인	6인	
계	80인	6인	

이 중 3등급은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 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분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하였으나 강제로 억류되어 북한에서 수십 년간 생존 위협, 사상 강요, 멸시와 감시 및 강제노

2) 조창호 중위의 탈북·귀환은 법 제정('99년 국군포로대우법) 이전에 이루어져 등급 미지정

역을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3등급 국군포로는 ‘변절자’, ‘부역자’ 등으로 낙인되는 등 국군포로 개개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억류국에의 동조 여부, 소극적·적극적 협조 여부 및 적대행위의 유무 등에 따른 귀환포로 등급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하여 포로가 된 국군포로를 차별없이 대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 헌법 제39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을 재확인하여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 및 전투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현행법에 따른 등급화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귀환포로 80인 중 70인을 ‘부역자’로 분류해서 국군포로의 ‘귀순’, ‘변절’을 인정했다는 논리로 북한의 제네바 협약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규범 위반 등 국제법상 책임을 회색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억류기간 중 억류국의 사상적 전향 요구나 체제 선전 활동

등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강제노동이나 수형생활 등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한 국군포로와 비교해 볼 때, 단순히 억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에는 그 희생과 헌신의 정도가 현저히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법령상 차등적 예우 체계는 현역 국군장병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군의 가치를 지키려는 선택에 대해 대한민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국방부는 현재 및 미래 국군의 본분, 국가관 함양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북관계가 완화될 때까지 現 등급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등록포로 월지원금 상향단일화

- ☐ 개정안은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등급에 따른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을 현행 1등급 수준으로 상향단일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위로지원금) ① . ② (생)	제11조(위로지원금) ① . ② (현행)

략)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3. 3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 ⑦ (생략)	과 같음)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	--

□ 등급제 폐지 후 단일화되는 월지원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및 국군의 표상이 되는 국군포로에 대한 대우 및 지원을 위한 동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현행법상 월지원금은 1등급이 약 1,100만원, 2등급이 약 770만원이며 3등급의 경우 최고 약 660만원 이내에서 억류기간의

행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월지원금 수혜대상자는 없는 상황임.³⁾

구분	금액기준	월지원금 (천원)
1등급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538원	11,026
2등급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7,718
3등급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시행령) 다음 각 호의 금액의 감액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억류국등(이하 “억류국 등”이라 한다)의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 전체 억류기간에서 그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억류국등에 국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월지원금 월 액(月額)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에 가담한 경우: 월지 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위장가족을 동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 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 5.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최고 6,616

3) 현재 생존자 6인은 2013년 동법 제11조 위로지원금 등 관련 규정이 개정(법률 제11652호, 2013. 6. 23. 시행) 되기 전에 정착금(위로지원금 과거 명칭)을 일시금으로 모두 수령하였음.

3.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등 포함

□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⁴⁾, 개정안은 이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과의 상봉이나 서신교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국군포로의 <u>소재</u> 및 현황	1. ----- <u>생사 여부, 소재</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국군포로의 그 가족과의 <u>상봉이나 서신교환에 관한 사항</u>
<신설>	2의3.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u>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u>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가족상봉, 서신교환, 신변보호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이고 개정안에 따라 이를 국군포로 기본 정책에 포함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함은 물론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교류의 경우 현재는 통일부 소관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⁵⁾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 포함)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시되고 있음.

이는 거의 모든 국군포로가 6.25 전쟁 국군포로⁶⁾이고 모두 북한

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6.>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6.25전쟁 국군포로 19,405명(추정), 베트남전 국군포로 2명

에 억류되어 있음에 따른 조치로서 동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신청으로 생사확인, 이산가족 상봉 등이 추진되고 있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 이루어진 국군포로 생사확인은 총 56명(남측 46명, 북측 10명)이며 실제 상봉은 총 18명(남측 8명, 북측 10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보통의 이산가족과 구분되는 국군포로 관련 생사확인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남북관계 이외의 상황에서도 국군포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입법적 필요성이 존재함.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의 경우 현행법 제5조의2에서 규정⁷⁾하고 있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나 이를 교사(敎唆)하는 행위 및 신상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임.

개정안이 전제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위협 행위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총리령)」 제13조의 2(경찰청), 제14조(제3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시의 조치사항), 제17조(신체안전의 확보)에서 규정⁸⁾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신변보호 관련 내용을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것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이 입법화 된다면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관련한 절차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총리령)」

제13조의2(경찰청) 경찰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귀환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신문 참여

2. 귀환포로의 신변보호 업무

3. 생존이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추적업무의 지원

제14조(제3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시의 조치사항) 제3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중점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 또는 첩보 등을 통한 국군포로 관련 사실의 인지와 신원 확인

2.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여부 결정과 송환의 요청

3. 신체안전의 확보

4.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제17조(신체안전의 확보) ① 외교부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송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군포로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하여 관련 국가와 협조하고 재외공관의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하여 **국군포로의 신체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대상 국군포로의 보호와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업무를 일반 탈북자 보호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현재 국군포로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별 업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

행정기관	업무분장
통일부	• 남북회담 등의 접촉을 통한 재북 국군포로 생사의 확인, 송환협상 대책 수립 및 협상의 추진 • 교류행사 등을 통한 재북 국군포로 생사의 확인과 상봉의 실시
외교부	•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이송을 위한 체류국 정부와의 협조 및 이송 관련 업무 •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관계 업무
국방부	• 국군포로와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 관계행정기관간 업무 협조의 주관 • 국군포로와 관련된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에서의 보고 • 국군포로 송환 관련 대북군사협상의 추진 • 국군포로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생존 추정 국군포로의 연고자 추적과 신원 자료의 유지 • 귀환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업무 • 대책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귀국 후 합동 신문(訊問) 종료 전 귀환포로의 신병(身柄) 관리 및 보호
국가정보원	• 국군포로와 관련된 첩보의 수집과 관계행정기관에의 관련 정보 제공 • 제3국의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신원 확인과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활동 지원 • 귀환포로에 대한 신병의 인수·확인 및 군·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신문 주관 • 귀환포로의 거주지와 신변에 관한 정보관리
국무조정실	• 국군포로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 업무의 추진현황 파악 • 국군포로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 활동의 지원
국가보훈부	• 전투 중 행방불명자와 미귀환 국군포로의 유가족에 대한 보훈 혜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경찰청	• 귀환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신문 참여 • 귀환포로의 신변보호 업무 • 생존이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추적업무의 지원

이와 같이 국군포로 관련 업무에 국방부 외에도 다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국군포로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 포함하는 경우 신변보호 대책과 관련한 절차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신변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 테러 등의 신변위협 사례는 경찰청, 귀환국군용사회(생존자 6명), 국군포로유족회(약70명), 국군포로가족회(약30명) 조사결과 최근 10년간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문 의 처
02)6788-5307